# 제재내용 공시

**1. 조합명** : 울진죽변수협

**2. 제재조치(요구)일** : 2026. 11. 12.

**3. 제재조치(요구)내용**

| 제재대상 | 제재내용 |
|---|---|
| 직원 | 견책(2명), 경고(2명) |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

**4. 제재대상 사실**

□ 대출 취급 부적정

○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부적정하게 취급함.

□ 대출 취급 및 자금용도 부적정

○ 기업운전자금대출 취급 및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.

**< 관련법규 >**

○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제2장 제16조의4(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),「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제2장 제8조의3(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)

○「상호금융 여·수신업무 운용규정」제3장 제13조(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)

○「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업무처리 매뉴얼(기준일 2025. 10. 15.)」Ⅰ총칙 3.용어의 정의, Ⅱ담보인정비율[LTV] 2.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[가계대출]

○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1편 제3조(여신운용의 원칙), 제19조(대출서류의 징구 및 확인), 제3편 제2조(업무취급 원칙), 제3조(상담 및 서류 징구), 제11조(조사방법), 제29-2조(휴폐업기업에 대한 확인 등), 제4편 제46조(기업자금의 기한이익상실)

○「상호금융조합의 여신업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모범규준」제17조(대환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등 확인)